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8년 4월 25일(수) (총 7쪽)	담당부서 담당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최난주 팀장(043-880-5421) 손재석 대리(043-880-5424)

안마의자, 고령자나 뼈 관련 질환자 등 사용 주의

- 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 등 사용 자제해야 -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71건 → ('16년) 92건 → ('17년) 99건

□ '골절'도 발생할 수 있어, 고령자 및 골다공증·척추 질환자 등 주의 필요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를 기재했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하였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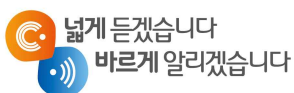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사용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탈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여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둘 것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 것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분석

□ (현황) 전기 안마기 중 '안마의자'가 절반 이상 차지

-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관련 피해정보는 총 262건이며, 이 중 안마의자 관련 피해정보는 총 148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음.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안마의자	33	64	51	148 (56.5)
기타 안마기	38	28	48	114 (43.5)
합계	71	92	99	262 (100.0)
증감률	-	(29.6)	(7.6)	-

□ (부작용·상해증상) '골절' ·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도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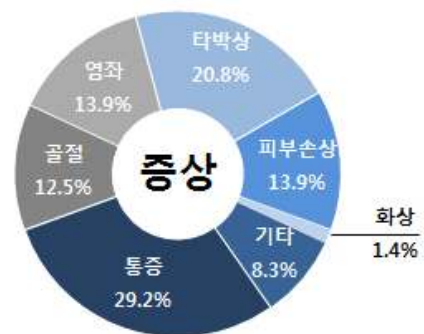
- 안마의자로 인한 부작용 또는 상해증상으로는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12.5%, 9건), '염좌'(13.9%, 10건)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 26.4%(19건), '타박상' 20.8%(15건) 등의 순이었음.

-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했음.

[상해증상별 현황 (안마의자)]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통증	21	29.2
근육·뼈 및 인대손상	골절	9
	염좌	10
	소계	19
타박상	15	20.8
피부손상*	10	13.9
화상	1	1.4
기타**	6	8.3
합계	72	100.0



* 부종 및 피부감각장애, 열상(찢어짐) 등

** 두통, 어지러움, 전기충격 등

※ 안마의자 관련 피해정보 중 상해증상이 확인되는 72건 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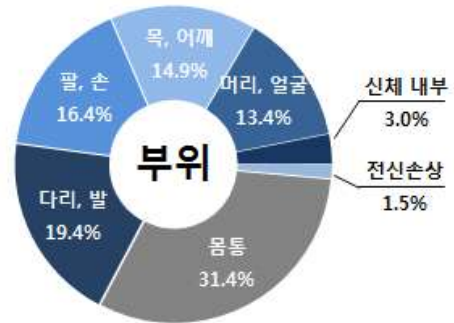
□ (상해부위) 전신안마 특성상 신체 다양한 부위에 증상 나타나

-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머리 및 얼굴' 13.4%(9건) 등으로 나타남.

[상해부위별 현황 (안마의자)]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몸통	21	31.4
둔부·다리 및 발	13	19.4
팔 및 손	11	16.4
목 및 어깨	10	14.9
머리 및 얼굴	9	13.4
신체 내부	2	3.0
전신 손상	1	1.5
합계	67	100.0



※ 안마의자 관련 위해정보 중 상해부위가 확인되는 67건 대상 분석

□ 주요 안마의자 위해사례

○ 찜질방에서 사용 중 척추압박골절 사례

- A씨(여성, 60대)는 2015년 찜질방에서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중 양손과 양다리가 압박으로 고정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자가 세워지며 어깨에서 특하는 소리와 함께 신체에 통증을 심하게 느낌. 바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결과 척추압박골절 및 어깨의 충격 증후군 등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음.

○ 안마의자 판매장에서 체험 후 다친 사례

- B씨(여성, 만49세)는 2017년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판매사원의 지시를 받으며 전시된 안마의자를 체험하던 중 신체에 통증을 느낌. 병원에서 인대가 늘어났다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음.

○ 디스크 및 골절환자 사용 중 부작용 사례

- 목 디스크 및 가슴부위 골절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 중인 C씨(여성, 만59세)는 2018년 안마의자 판매장에서 10분 정도 체험 후 판매자로부터 이용 제한자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했으나 허리와 등에 통증이 심해 움직이기 어려워짐.

□ (안마의자 사용설명서) 이용 제한자 표시 구분하고 가독성 높일 필요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의 대표 모델 각 1종
- (조사내용) 안마의자 사용설명서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표시실태

- (이용 제한자 표시) 조사대상 안마의자 5종 모두 사용설명서 상에 이용 금지 또는 의사와 상담 후 이용 등 이용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해 놓았는데, 주로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특정 질환자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었음.
 - (어린이) 3종은 어린이의 안마의자 이용을 금지·자제, 2종은 보호자의 관리 하에 사용할 것을 표시했음.
 - (고령자) 4종은 고령으로 인해 근육이 쇠약해졌거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주의하거나 보호자의 관리 하에 사용할 것을 표시했으나, 1종은 고령자에 대한 아무런 이용 제한 표시가 없었음.
 - (임산부) 5종 모두 임산부 사용 자제를 표시했으며, 이 중 3종은 출산 직후 사용을 자제할 것을 표시했음.
 - (특정 질환·신체 이상자) 제품에 따라 이용 제한을 표시한 질환자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전 제품이 공통적으로 디스크, 골다공증, 척추골절 등을 포함한 뼈 계통이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음.
- (표시의 가독성 및 부작용 우려 표시) 사용설명서 1종만 ‘부적절한 사용자’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 제한 대상자를 나열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종은 일반적인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과 혼용 기재하여 이용 제한자 정보가 눈에 쉽게 띄지 않았음.
 - 또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이나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병기하여 주의 환기한 제품은 4종 있었으나, 전 제품 모두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부작용·상해증상 등을 기재하지는 않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음.

□ (안마의자 체험시설) 안마카페, 찜질방에 안마의자 이용 안전수칙 게시 미흡

< 조사개요 >

- (조사일자) 2018. 3. 13.(화) ~ 3. 20.(화)
- (조사장소) 서울, 경기, 충청권 소재 안마카페 10곳 및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찜질방 10곳
- (조사내용) 안마의자 관련 안전수칙 게시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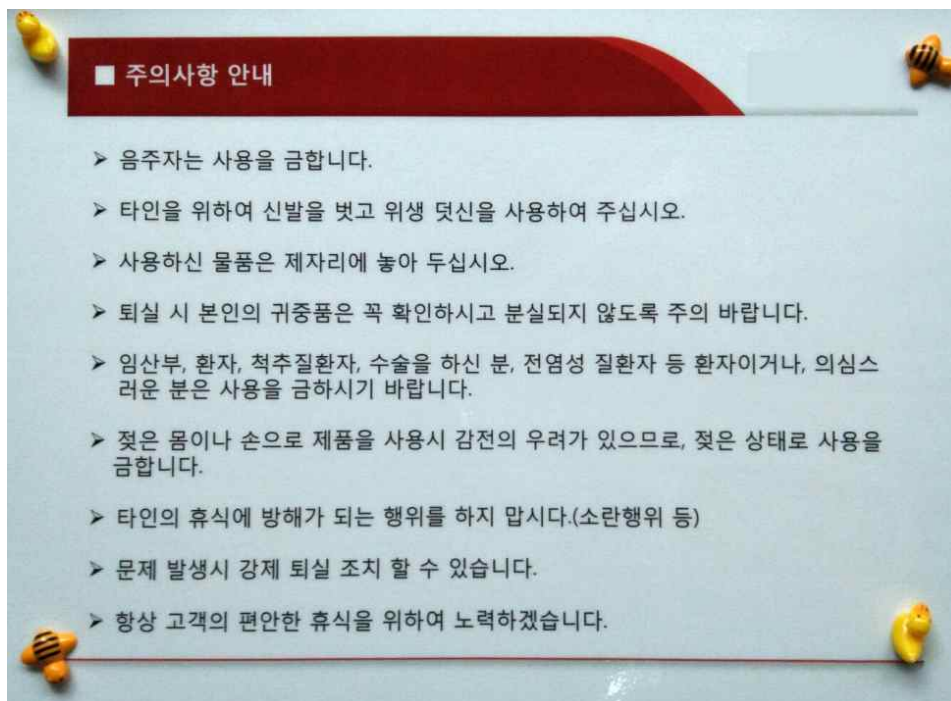
- (안전수칙 게시) 안마카페 10곳 중 안마의자 이용 제한자 등 안전수칙을 게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8곳은 안전수칙이 게시되지 않았음.

* 1곳은 “임산부, 환자, 척추질환자, 수술을 하신 분, 전염병 질환자 등 환자이거나 의심스러운 분”의, 다른 1곳은 “최근에 디스크 수술을 했거나 골절이 있는 분”의 이용을 금할 것을 기재했음.

- 찜질방 10곳 중 안전수칙을 게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젖은 상태로 이용 금지’ 및 ‘청소년 이용 금지’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있을 뿐, 척추질환자, 임산부 등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안마의자 체험장 안전수칙 게시 현황]

(예시) 안마카페의 안전수칙 게시 내용



□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척추 질환자, 골다공증 환자, 뼈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하세요.
 - 기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거쳐 결정하세요.
- ※ 안마의자 별로 제품 특징(안마모드, 강도 등) 및 이용자(건강 상태)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할 것

□ 사용 전 주의사항

- 사용설명서를 읽고 제품 조작방법을 숙지하세요.
- '멈춤' 또는 '종료'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 제품의 커버가 찢어진 곳이 있는 경우 감전이나 머리카락 등이 끼일 수 있으므로 외관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용 중 주의사항

- 사용 중에는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세요.
- 가장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세요.
- 사용 중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 정해진 용도와 부위에 맞게 사용하며, 적정 사용시간을 준수하세요.
- 온열기능으로 저온화상이 발생 수 있으니 맨살이 닿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이용하지 마세요.